



'20년 국가 ICT 혁신기술 지정 제품 소개자료

스타코프 차지콘®

I. 제품 소개: 스타코프 차지콘®

전기차 인식 스마트 콘센트, 차지콘® : '20년 2월 과학기술부 기술혁신 지정



일반 전기제품



청소 카트, 소방 설비 등
공용 설비:

1. 결제 없이 이용하거나,
2. 차단하도록 설정 가능

전기차 신호인식



전기차:

카드 결제로
전기 사용 가능

I. 제품 소개: 기능 및 구조

전기차 도전 차단

도전에 취약한 일반 콘센트와 달리, 부하패턴 인식과 RFID 인증을 통해 전기차 도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충전 주차구역 설정 불필요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 설정이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충전 주차구역으로 인한 수많은 분쟁을 예방함

전기차 부하패턴 인식

인공지능 기반 부하패턴 분류기술 적용으로 전기차 충전을 인식

RFID 카드태그

신용카드, 스마트폰, 회원카드의 간단한 태깅을 통해 전기차 충전

KC안전인증 획득

방진/방수성능, 콘센트 KC인증 RFID/USN KC인증, 전자식 스위치 KC인증 등 안전인증 획득,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10억 원)

NB-IoT 통신모듈 탑재

24시간 원격 단말관리, 최소한의 고장율 및 유지관리 대응시간 보장

콘센트 교체 설치 가능

일반 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으로서, 작은 공간에 빠른 속도로 설치 가능

규제혁신 계량 형식승인 제품

콘센트에 계량 기능을 내장하여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한전과 자동 정산

상판-중판-하판 3중 구조

물리적 충격 등으로 인한 파손에 최소한의 영향으로 정상 가동 가능



I. 제품 소개: 신축 건축물 적합 기술

전기차 충전기 및 주차장 콘센트 법적 구비 의무 만족 및 녹색 건축물 가점 인정

| 산업부 공식 보도자료 |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 |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보도 설명 자료 (‘19. 4.22)</p> <p>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획득시 가점을 받을수 있음 (전자신문 4.22일 보도에 대한 설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획득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4월22일 전자신문 <“규제샌드박스 선정된 ‘과금형 콘센트’, 현실 장벽에 막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해당되어 가점을 받을수 있음</p> </div> <p>□ 동 사실을 시장 및 업계에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건설기술 연구원이 배포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에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할 예정</p> <p>※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정책과 김태자 과 장(044-203-4510) 박용근 사무관(044-203-4515)</p> | <p>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친화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p>제18조(환경친화적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본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차용 보관정차시설 나. 폐차용 보관정차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문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다. 자동차 관련 시설 따. 방송통신시설 하. 발원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본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차역 다.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p>【본조신설 2016. 6. 30】</p> | <p>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례 등을 유예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인증기준 2016-4 <신축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G-SEED</th> <th>전문분야</th> <th>ID</th> <th>혁신적인 설계 : 토치이용 및 고통</th> </tr> </thead> <tbody> <tr> <td>인증항목</td> <td>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평가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평가목적</th> <th>대치 내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현황으로써 녹색환경을 조성하며,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을 도모</th> </tr> </thead> <tbody> <tr> <td>평가방법</td> <td>대치 내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이용공간의 조성여부으로 평가</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배 점</p> <p>1점(가산점목)</p> <p style="text-align: center;">산출기준</p> <p>· 행정 = (가중치)×(배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대안적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조성 필수 항목</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1급</td> <td>4점</td> <td>1.00</td> </tr> <tr> <td>2급</td> <td>3점</td> <td>0.75</td> </tr> <tr> <td>3급</td> <td>2점</td> <td>0.50</td> </tr> <tr> <td>4급</td> <td>1점</td> <td>0.25</td> </tr> </tbody>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이용 공간의 조성 여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승용차공유(카-셰어링) 주차 공간 조성 및 표시선 설치</td> <td>1</td> </tr> <tr> <td>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시설 설치(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td> <td>1</td> </tr> <tr> <td>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및 관리시설 설치</td> <td>2</td> </tr> </tbody> </table> </div> <p>·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p> </div> <td data-bbox="1829 444 2390 1125"> <p>제6조(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열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1. 1. 6., 2016. 6. 12., 2017. 12. 26., 2019. 1. 16., 2020. 1.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층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열 제26조에 따른 주차면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기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층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층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4.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기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된 경우 5.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지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형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표시 이력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세컨트를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나.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적 충전기 또는 법적 충전기(이하 '법정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3. 7. 20】 </td> | G-SEED | 전문분야 | ID | 혁신적인 설계 : 토치이용 및 고통 | 인증항목 |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 | | 평가목적 | 대치 내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현황으로써 녹색환경을 조성하며,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을 도모 | 평가방법 | 대치 내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이용공간의 조성여부으로 평가 | 구분 | 대안적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조성 필수 항목 | 가중치 | 1급 | 4점 | 1.00 | 2급 | 3점 | 0.75 | 3급 | 2점 | 0.50 | 4급 | 1점 | 0.25 |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이용 공간의 조성 여부 | 점수 | 승용차공유(카-셰어링) 주차 공간 조성 및 표시선 설치 | 1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시설 설치(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 1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및 관리시설 설치 | 2 | <p>제6조(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열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1. 1. 6., 2016. 6. 12., 2017. 12. 26., 2019. 1. 16., 2020. 1.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층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열 제26조에 따른 주차면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기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층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층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4.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기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된 경우 5.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지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형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표시 이력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세컨트를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나.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적 충전기 또는 법적 충전기(이하 '법정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3. 7. 20】 |
| G-SEED | 전문분야 | ID | 혁신적인 설계 : 토치이용 및 고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증항목 |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대치 내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현황으로써 녹색환경을 조성하며,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을 도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대치 내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이용공간의 조성여부으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대안적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조성 필수 항목 | 가중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급 | 4점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3점 | 0.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급 | 2점 | 0.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급 | 1점 | 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이용 공간의 조성 여부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용차공유(카-셰어링) 주차 공간 조성 및 표시선 설치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시설 설치(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및 관리시설 설치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산업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인정”</p> | <p>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비 의무화</p> | <p>녹색 건축물 인증 제도 가점 적용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10% 감면</p> | <p>전기차 220V 이동형 충전기를 위한 콘센트 구비 의무화(주차면의 4%)</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기술 비교: 급속 및 완속 충전기

| 항목 | 기존 급속/완속 기술 | | 스타코프 기술 |
|----------|---|---|---|
| | 급속 충전기 | 완속 충전기 | 차지콘® |
| 외관 |  |  |  |
| 충전 방식 | DC400V | AC220V / 60Hz | AC220V / 60Hz |
| 플러그 젠더 | 적합한 플러그가 없을 경우 추가로 필요 | 필요 | 불필요 (모든 전기차 젠더 없이 가능) |
| 충전 속도 | 40kW 이상 | 7kW | 3kW |
| 과금 방식 | 회원카드, 신용카드 | 회원카드 | 회원카드, 신용카드(QR) |
| 전용 주차면 | 필요 | 필요 | 불필요 |
| 유지 관리 비용 | 대당 연 150만 원 수준 | 대당 연 30만 원 수준 | 무상 유지관리 및 운영 |
| 충전 요금 | 255.7원/kWh (환경부 고시 요금) | 220 ~ 250원/kWh (환경부 등록 충전 사업자 기준) | 173.8원/kWh (단일 요금, 국내 충전 사업자 中 최저 수준) |

III. 충전기 관리: 도전(盜電; 전기도둑질) 및 전기안전 관리

콘센트 에서의 **고질적인** 전기차 도전(盜電; 전기도둑질) 및 전기 사고 **위험성 해결**



혁신 기술 도입



누구나 무단으로 전기 사용이 가능
→ 비용이 정산되지 않고, 전기적으로 위험

스마트폰 또는 회원카드 태그만으로
간편하게 요금을 내고 안전하게 충전 가능

III. 충전기 관리: 전기차 충전 주차면 갈등 해결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면없이 대부분 주차면에서 충전할 수 있어, 주차갈등 해결

뉴스룸 | 최신기사

전기차 충전하려다 살인미수까지...제주서 '충전 갈등' 심각

송고시간 | 2019-01-04 06:00

전기차 주유소인데... 충전소 '배짱주차' 갈등

입력 2018.02.12 04:40

♡ 0 0 0



혁신 기술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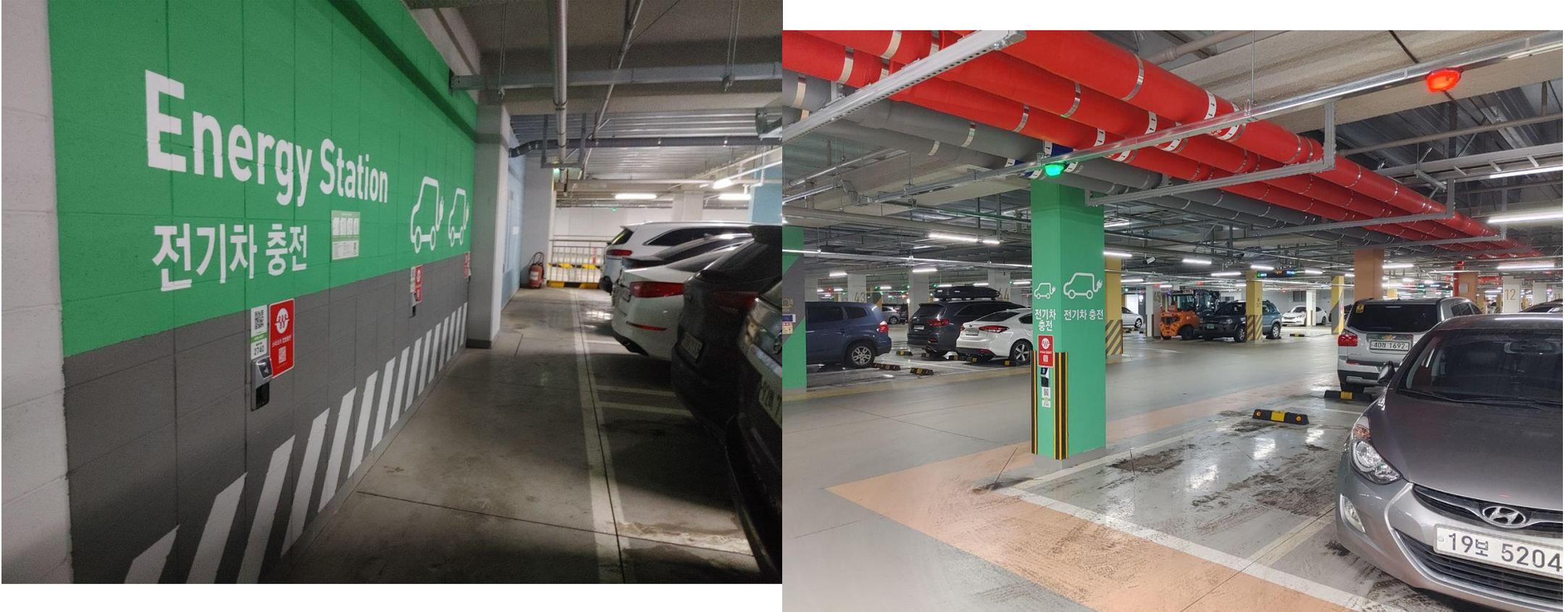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 설정으로
일반 자동차에 대한 역차별, 지속적 분쟁

1개 차지콘이 3~4개 주차면 충전 지원
→ 저비용으로 주차장 어디에서나 전기차 충전 가능

IV. 설치 사례: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청 혁신시제품 사업을 통해 228기 설치 완료, 신축 건물 과금형 콘센트 설치 의무화



신축 건축물 콘센트를 단순히 1:1 교체하는 것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대량 확보

IV. 설치 사례: (공공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사업을 통해 200기 설치 진행, 추가 도입 검토 중



신축 건축물 콘센트를 단순히 1:1 교체하는 것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대량 확보

IV. 설치 사례: (지자체) 서울시 성동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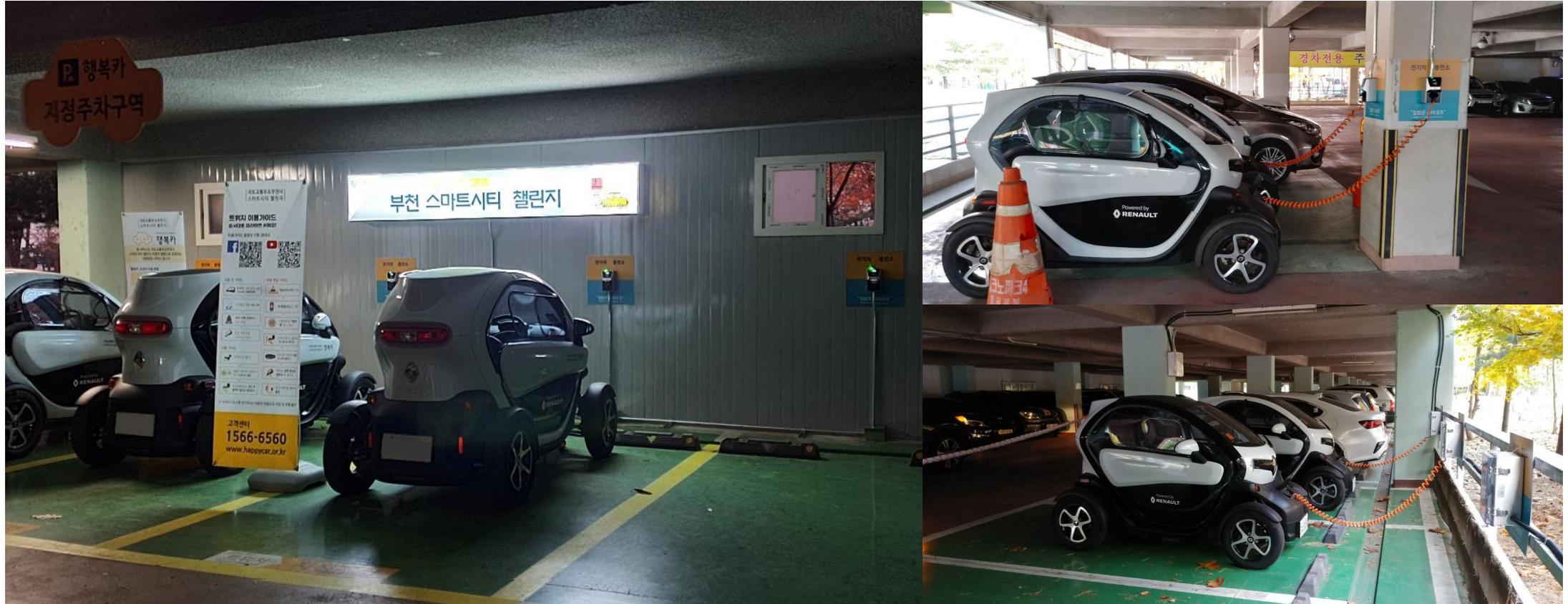
관내 약 150개 설치를 통해 주민 충전 인프라 제공 및 친환경전기차 보급 선도



3개 주차면 당 1개 충전기 설치를 통해 "관내 공영주차장 어디에서나" 전기차 충전이 가능

IV. 설치 사례: (지자체) 부천시청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및 전기 자전거 충전용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의 퍼스널 e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범용 솔루션으로 활용

IV. 설치 사례: (공공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야외에 자립형 스탠드로 주차장 곳곳에 설치, 관용 및 임직원 전기차 충전시설로 활용



임직원 전기차 구매 증가를 예상하고 친환경전기차 충전 시설을 선도적으로 보급

IV. 설치 사례: (병원) 서울 아산병원

아산병원 신축 주차동에 급속 및 완속 충전기와 함께 42개 설치, 방문객 충전시설 제공



방문 고객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 편의 제공 및 충전 수익 창출

IV. 설치 사례: (아파트) 세종시 캐슬앤파밀리에

급속/완속 충전기 10기 보유했으나 지속적 분쟁 → 차지콘® 설치로 충전 분쟁 해결

① 기존 급속 충전기



**일반차량 지정구역 주차문제 심각,
보조금 문제로 추가 설치 불가능**



주민 분쟁, 충전기 댓수 절대부족

② 기존 이동형 충전기



**구매비용 / 월정액 반발로
입주민 전용 충전기 구매 거부**



이용률 0%

③ 스타코프 차지콘

'19.08.08: 최초 3개 설치



B1 Y51 (FAN24) 416-Plaza entrance (4) B1 Y63 (FAN28) 418 (1) B2 O35(FAN05) 406 (2)

추가 설치 요청

'19.08.26: 3개 추가 설치



B1 Y45 (FAN22) 416 5-6Line (4) B1 B11 (FAN16) 411 (2) B1 G41(FAN11) 405 (2)

추가 설치 요청

'19.09.30: 7개 추가 설치



B2 O11 402 (4) B2 O07 402 (2)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 분쟁이 없고, 지자체 행위허가가 불필요한 공동 주택 완속 충전 솔루션